

『외화보통예금』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「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」

- 이 상품은 원화로 인출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외화현찰을 외화예금에 입금할 때에는 고객은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외화현찰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
- 외화 현찰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외화 현찰로 인출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
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외화보통예금
- 상품특징 :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**

구분	내용
가입대상	• 제한없음
예치통화	• USD, CNY, EUR
상품유형	•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보통예금)
거래방법	• 신규 : 영업점 • 해지 : 영업점
이자지급시기	•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 20일과 12월 20일에 계산하여 익영업일(원가일)에 원금에 더함
적용세율	•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.4% (이자소득세(14.0%) + 지방소득세(1.4%)) (거주자) ※ 적용세율은 2022.07.16. 현재의 세율이며,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※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 체결에 따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•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피해의심 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 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

기본이자율 (세금공제전)	• 신규일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통화별 기본이율 적용	
이자 산출근거	•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,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에서 게시한 이율로 계산함	
예금 해지 시 불이익	• 해당없음	
예금자보호여부	해 당 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 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 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 하지 않습니다.
세제혜택	불가능	세금우대 및 비과세종합저축 적용 불가능
양도 및 담보제공	• 양도 및 질권설정은 은행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	
거래중지	•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, 잔액조회 등의 거래 제한 예금잔액이 미화 10불 상당액 미만이며,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•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 창구를 통하여 본인을 확인한 후 가능	
위법계약해지권	•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	
자료열람요구권	•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 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•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	
계약해지방법	• 영업점을 통해 해지가 가능 하며, 일부해지 불가능	

3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,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상품은 원화로 인출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이 예금을 원화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하는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고, 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하는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합니다.

다만, 외화현찰수수료를 면제한 경우로서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 환율은 은행이 고시한 대 고객 현찰매입률로 합니다.

- 외화현찰을 외화예금에 입금할 때에는 고객은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외화현찰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

- 외화 현찰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외화 현찰로 인출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

이 상품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운영관리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부 (02-3788-6617), 부산지점(051-463-8788), 대림지점(02-836-6815), 건대지점(02-3409-8900)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금융 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<https://www.fcsc.kr>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부 록 **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**

용어	설명
압류	•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•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•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: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
본인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본인은 상품설명서를 수령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예금주: _____ (인 또는 서명)

대리인: _____ (인 또는 서명)